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43 발의연월일: 2024. 11. 14.

발 의 자 : 김승수 • 권성동 • 엄태영

김은혜 · 강대식 · 김석기

김상훈 · 정동만 · 권영진

조배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부적절한 보조사업 수행, 협회 운영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면서,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사무검사와 보조사업수행상황 점검을 진행하였음.

그러나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로 한정하고 있어, 체육단체의 부적정한 운영에 대해서는 징계요구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고·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보고·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을 명확히 하며,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·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

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9, 제44조).

한편,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(회장 포함)의 징계나 연임심의를 해당 단체 또는 회원의 이익을 보장해야하는 의무 가 있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 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를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게 하고,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그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3, 제18조의9, 제33조, 제34조 등).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3제3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에 관한 사항

6의3.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제한 예외 심의에 관한 사항

제18조의9제2항 전단 중 "인권침해에 대하여"를 "인권침해 또는 제44 조제1항에 따른 보고·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,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심의한다.

제3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체육회 및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를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
제34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 윤리센터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
제44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체육회, 지방체육회, 장애인체육회, 진흥공단, 수탁사업자,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시 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 통보할 수 있다.
- ⑤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.
-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·배제의 기간,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8조의3(스포츠윤리센터의 설	제18조의3(스포츠윤리센터의 설		
립) ①・② (생 략)	립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		
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	③		
호의 사업을 한다.		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6의2.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		
	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		
	징계 심의에 관한 사항		
<u><신 설></u>	6의3.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제		
	한 예외 심의에 관한 사항		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		
④ ~ ⑧ (생 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		
제18조의9(고발 및 징계요구) ①	제18조의9(고발 및 징계요구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	2		
츠비리 및 체육계 <u>인권침해에</u>	<u>인권침해 또는</u>		
<u>대하여</u>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	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		
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	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		
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	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		
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			
에 따라야 하고, 요구를 받은 날			
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			
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			
여야 한다. 다만, 문화체육관광			

부장관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 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 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<신 설>

제33조(대한체육회) ① ~ ⑧ (생 략)

<신 설>

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 ① ~ 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 ① ~ ⑨ (생 략)

<신 설>

-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 고,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 인체육회 임원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 이 있는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 터가 징계를 심의한다.

제33조(대한체육회) ① ~ ⑧ (현 행과 같음)

⑨ 체육회 및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으 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윤리센 터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.

⑨ (현행과 같음)

⑩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육

제44조(보고·검사 등) ①·②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,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
제44조(보고·검사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 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 을 때에는 체육회, 지방체육회, 장애인체육회, 진흥공단, 수탁 사업자,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 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 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중앙 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체

	육단체 등에 통보할 수 있다.
<u> <신 설></u>	⑤ 중앙행정기관・지방자치단
	체 및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
	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
	이 제4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
	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자
	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
	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
	<u>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정
	지원 중단·배제의 기간, 정도
	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
	로 정한다.